

의안번호	2203534
의 퇴 인	서미화의원
회 답 일	2024.10.23.
추계번호	24D2263
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 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7조의2 (국선보조인)	법원은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음. 다만, 소년에게 신체적·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, 빈곤이나 그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, 그 밖에 소년부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법원은 직권으로 보조인을 선정하여야 함(제1항)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함(제2항)	재량규정 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근거규정
1	안 제17조의2 (국선보조인)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사유

- 최근 5년간 소년보호사건에 해당하는 소년은 2019년 36,756명에서 2023년 43,042명으로 연평균 8.2%씩 증가하였으며, 이 중 국선보조인 조력을 받은 수는 2023년 6,042명으로 전체 사건의 12.1%에 해당

[표 1] 소년보호사건 접수건수 및 국선보조인 조력 현황

(단위: 명, %)

구분	2019	2020	2021	2022	2023	연평균 증가율
접수 건수	36,576	38,590	35,438	43,042	50,094	8.2
국선보조인 조력을 받은 수 비율	—	—	—	4,888	6,042	23.6
	—	—	—	11.4	12.1	—

자료: 법원행정처

- 소년보호사건에서의 국선보조인 보수는 「소년법」 제17조의2제3항 및 「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2항에 따라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하고 있는데, 2024년 기준 국선보조인의 기본보수는 건당 20만원이며, 2024년 9억 5,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

[표 2] 소년보호사건 국선보조인 관련 예산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0	2021	2022	2023	2024
예산	1,075	983	994	1,544	959

자료: 법원행정처

- 개정안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에 해당하는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국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, 국선보조인 선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재정소요 발생
- 또한, 소년에게 신체적·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, 빈곤이나 그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, 그 밖에 소년부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보조인을 의무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므로, 국선보조인 선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
- 다만, 소년보호사건에 해당하는 소년에 대해 국선보조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재량규정으로, 현 시점에서 법 개정 시 소년보호사건 중 국선보조인 선임 비율에 대해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- 또한, 소년보호사건 해당 소년 중 소년에게 신체적·정신적 장애가 의심되

는 경우, 빈곤이나 그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소년의 수나 비율 관련 자료가 부재

- 이와 같이 소년보호사건 해당 소년 중 국선보조인 선임 비율 등 관련 자료의 부재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IV. 부대의견

- 해당사항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수연	김안나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수연	02-6788-4667	syjeon@assembly.go.kr